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9일 20시 02분

일반현황	장애인등록	복지시책	30인 이상 거주시설
공동생활가정, 단기보호	장애인복지관	장애인주간보호시설	장애인직업재활시설
기타시설	재활정보		

장애인등록절차	장애종류 및 기준	유형별 장애판정 시기
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

등록 대상 및 비용지원

· 근거규정: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등록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

· 지원대상

-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
-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직권 재판정대상자인 일반 장애인

· 지원내용

- 진단서 발급비 지원 :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 최대 4만원 / 그 외 장애 최대 1만5천원
- 검사비 지원 : 최대 10만원

☐ 절차안내

- ① (관할 동행정복지센터):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
- ② (의료기관):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
- ③ (동행정복지센터):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
타 법령상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여부, 보행상 장애 여부 추가심사 진행
- ④ (동행정복지센터):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
- ⑤ (국민연금공단):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, 장애정도결정
- ⑥ (국민연금공단):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심사결과 통보
- ⑦ (동행정복지센터):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
- ⑧ (동행정복지센터):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
- ⑨ (동행정복지센터):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

MokPo - Si
Web Contents

